02. 보상한도 및 구비서류

□ 보상금액 (사고일자가 2005.02.22 이후인 경우)

* 사망 : 최저 2,000만원~ 최고 1억원 * 부상 : 최저 80만원 ~ 최고 2,000만원 * 장해 : 최저 630만원 ~ 최고 1억원

□ 손해보상금의 청구방법

1) 청구권자

☑ 사망사고

민법 제1000조, 제1001조 및 제1003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권자

* 상속순위(민법 제1000조)

피상속인의 직계비속, 피상속인의 직계존속, 피상속인의 형제자매,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 혈족

* 배우자의 상속순위(민법 제1003조)

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상속순위 직계비속, 직계존속이 있는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,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

☑ 부상 및 후유장해사고

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의 상대방이 된다. 그러나 피해자가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미성년자이거나 합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과 합의하여야 한다.

2) 구비서류

- 손해보상금 지급 청구서

PNSONEL TEL: 02-458-8216 FAX: 02-457-4971

-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
- 진료비명세서(필요시)
- 향후치료비 추정서(필요시)
-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→ 사고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발급
- 인감증명서,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(필요시)
- 기타

TEL: 02-458-8216 FAX: 02-457-4971 **2**